제98회 정기이사회 회의록

▢ **일　　시** : 2013. 3.22(금) 07:30

▢ **장　　소** : 달개비(서울특별시의회 본관 옆)

▢ **참 석 자** : 9명(이사 8명, 감사 1명)

◦ 이　사 : 이OO, 오OO, 염OO, 이OO, 이 O, 정OO, 류OO, 황OO

◦ 감　사 : 송OO

▢ **심의안건**

◦ [제1안건] 이사선임(안)

◦ [제2안건] 감사선임(안)

◦ [제3안건] 2012년 회계연도 수지결산 및 이익잉여금 처분(안)

◦ [제4안건] 인사규정 중 일부개정(안)

◦ [제5안건] 복무규정 중 일부개정(안)

◦ [제6안건] 2013년 제1회 경정예산(안)

▢ **보고안건**

◦ 기금운용보고

○ 기획조정본부장 : 안녕하십니까? 바쁘신 가운데 이사회에 참석하여 주신 이사장님과 이사님 그리고 감사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. 성원보고에 앞서 지난 1월 1일 서울시 인사발령으로 당연직 이사로 임명되신 이사님과 2월 16일 당연직 감사로 임명되신 감사님을 소개하겠습니다.

[행정국장, 정책기획관, 감사관] 소개

재적이사 9분 중 8분이 참석하여 정관 제25조의 규정에 의거 성원이 되었습니다.

○ 이사장 : 성원이 되었으므로 서울연구원 제98회 정기이사회를 개회하겠

습니다. 기획조정본부장께서는 간략하게 서울연구원 주요업무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
○ 기획조정본부장 : [2013년 서울연구원 주요업무보고] 설명

○ 이사장 : 수고하셨습니다. 서울연구원 주요업무보고 내용과 관련하여 의견이나 질의하실 내용이 있으시면 말씀 부탁드립니다.

○ 행정국장 : 위촉연구원 고용 안정과 관련하여 건의사항이 있습니다. 해당 문제와 관련하여 우리시, 서울연구원 및 서울시립대 제 3자간 협업연구 방안을 고민하고 있습니다. 현재도 서울연구원이 과제수행 시 서울시와 업무협의, 중간보고의 형태로 지속적인 업무교류를 해오고 있으나, 이를 좀 더 발전시켜서 3자 기관 간 파견근무 또는 교환근무 형태로 인력을 교류하는 방식을 추천합니다. 예를 들어 서울시 중간관리자급 공무원을 서울연구원으로 파견하는 대신 연구원에서도 연구인력을 교환근무 형태로 파견하게 되면 인력증원 등의 부담없이 협업할 수 있는 좋은 방안이라고 봅니다. 향후 구체적인 방안을 수립하여 서울시립대와 서울연구원과 함께 논의할 예정입니다.

○ 이사장 : 원장님께서는 이에 대하여 어떻게 생각하십니까?

○ 원장 : 특별하게 예산이 수반되는 사항이 아니며 기관 간 인적교류를 강화하는 것이 시장님의 방침인 만큼 적극 추진할 의지가 있습니다.

○ 기획조정실장 : 인적교류 외에도 프로젝트 단위로 현안에 대하여 3개 기관이 함께 하는 방안에 대해서도 논의하고 있는 중입니다.

○ 이사장 : 더 이상 의견 없으시면 안건 심의로 넘어가겠습니다. 첫 번째 안건으로 이사선임(안)을 상정합니다. 기획조정본부장께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
○ 기획조정본부장 : [이사선임(안)] 설명

○ 이사장 : 별도의견 있으십니까?

○ 이 사 : 없습니다.

○ 이사장 : 이상 의견 없으시면 본 안건은 원안의결 하도록 하겠습니다.

○ 이사장 : 두 번째 안건으로 감사선임(안)을 상정합니다. 기획조정본부장께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
○ 기획조정본부장 : [감사선임(안)] 설명
○ 이사장 : 별도의견 있으십니까?
○ 이　사 : 없습니다.
○ 이사장 : 이상 의견 없으시면 본 안건은 원안의결 하도록 하겠습니다.
○ 이사장 : 세 번째 안건으로 2012년도 회계연도 수지결산 및 이익잉여금 처분(안)을 상정합니다. 기획조정본부장께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○ 기획조정본부장 : [2012년도 회계연도 수지결산 및 이익잉여금 처분(안)] 설명
○ 000 : 고유목적사업 준비금과 기금의 차이는 무엇입니까?
○ 기획조정본부장 : 기금은 연구원 결산이후 남은 금액을 전입하여 누적된 금액을 의미하고, 고유목적사업 준비금은 기금과 연간 자금운용 시 발생하는 이자가 누적된 금액으로 별도계정으로 운용하고 있습니다.
○ 000 : 성격이 비슷한 것 같습니다.
○ 원장 : 맞습니다. 해당 준비금을 이사회에서 기금으로 전입을 의결하는 경우 기금으로 누적이 되지만, 올해의 경우는 기금으로 넣지 않겠다라는 말씀입니다.
○ 이사장 : 해당 안건 관련하여 외부감사 결과 적정하다고 보고를 드렸습니다만, 이에 대하여 신임감사관이신 000 감사께서 의견있으시면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.
○ 000 : 의견 없습니다.
○ 이사장 : 이상 의견 없으시면 본 안건은 원안의결 하도록 하겠습니다.
○ 이사장 : 네 번째 안건으로 인사규정 중 일부개정(안)을 상정합니다. 기획조정본부장께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○ 기획조정본부장 : [인사규정 중 일부개정(안)] 설명
○ 이사장 : 별도의견 있으십니까?
○ 이　사 : 없습니다.
○ 이사장 : 이상 의견 없으시면 본 안건은 원안의결 하도록 하겠습니다.
○ 이사장 : 다섯 번째 안건인 복무규정 중 일부개정(안)을 상정합니다. 기획

조정본부장께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
○ 기획조정본부장 : [복무규정 중 일부개정(안)] 설명

○ 이사장 : 설명에 대해서 다른 의견이나 질문 있으십니까?

○ 기획조정실장 : 휴가 등은 출연기관 자율에 따라 운영을 하겠지만 참고로 서울시는 배우자 출산 시에 청가일수를 5일로 부여하고 있습니다.

○ 기획조정본부장 : 개정(안) 검토 시 타 기관 사례조사 결과 서울시 산하기관 대다수가 3일로 운영하고 있어 서울시와 같이 5일로 제안하는 것에 좀 부담이 있었습니다.

○ 원장 : 이사님께서 5일로 제안해주시면 해당 내용을 수정의결 대상으로 검토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.

○ 기획조정실장 : 청가일수를 5일로 하고 사정에 따라 3일로 하여 유연하게 대응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봅니다.

○ 이사장 : 서울시 직원복무에 대해서 행정국장이 총괄하고 있는 입장인데 본인께서는 이 제안에 대하여 어떻게 생각하십니까?

○ 행정국장 : 좋은 취지라고 생각합니다. 직원복지 및 출산장려 시책에 부응하여 5일로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.

○ 이사장 : 이상 의견 없으시면 직원복지증진 차원에서 청가일수 3일을 5일로 개정하여 수정의결 하도록 하겠습니다.

○ 이사장 : 여섯 번째 안건인 2013년 제1회 경정예산(안)을 상정합니다. 기획조정본부장께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
○ 기획조정본부장 : [2013년 제1회 경정예산(안)] 설명

○ 이사장 : 설명에 대해서 다른 의견이나 질문 있으십니까?

○ 000 : 위촉연구원 대상으로 4대보험이 적용이 됩니까?

○ 기획조정본부장 : 예, 그렇습니다.

○ 000 : 그렇다면 해당 연구원을 기간제로 2년 이상 고용 시 정규직 전환 대상에 해당이 됩니까?

○ 기획조정본부장 : 고용노동부에 해당 내용을 공문으로 질의한 결과, 기간제로 근무기간이 2년을 초과하더라도 연구인력으로 근무하는 경우에는 전환대상에 해당이 되지 않는다는 답변을 얻었습니다.

○ 부원장 : 연구인력으로 근무하는 한 대상이 되지 않으나, 일상적인 행정업무를 하는 경우는 전환대상이 됩니다.

○ 원장 : 박사 연구원과 동일한 경우로 2년 이상 계속근로를 하는 경우에도 연구원의 정규직 고용의무는 없습니다.

○ 이사장 : 이상 의견 없으시면 본 안건은 원안의결 하도록 하겠습니다.

○ 이사장 : 이상으로 안건심의를 마치고 연구원 기금운용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. 기획조정본부장께서 요약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.

○ 기획조정본부장 : [기금운용보고] 설명

○ 이사장 : 앞선 결산보고 내용과 연계된 내용이었습니다. 바쁘신 가운데서도 자리를 참석해주신 이사님을 비롯한 모든 분들에게 감사말씀 드립니다. 실무관계자 여러분도 수고 많으셨습니다. 이상으로 서울연구원 제 98회 정기이사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.